

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7.8.(화) 조선일보, “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지만...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져”, “소비 쿠폰 뿌리고는, 알바 고용보험료 내라? 가게 사장님의 한숨” 기사 등

2. 설명 내용

- 이번에 입법예고한 「고용보험법」 개정안은 「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」('20.12월)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'23년 3월부터 노·사·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「고용보험위원회」에서 심의·의결('25.5.29.)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
-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,
 -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- 다만, 이 과정에서 보험료 지원* 등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임

* (사회보험료 지원사업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의 80% 지원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	책임자	과 장	하창용 (044-202-7347)
	고용보험기획과	담당자	서기관	배혜영 (044-202-7352)
	고용서비스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영기 (044-202-7368)
	고용지원실업급여과	담당자	사무관	조정익 (044-202-7350)